

박형준 / 2월+3월+5월 / 도약 GS / 8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29059	21	14	17.5	14	66.5	1	2.70%	7	37
534241	21	13.5	18.5	12.5	65.5	2	5.41%	7	
534806	20.5	14	17	12	63.5	3	8.11%	6	
534161	20	13.5	17	9.5	60	4	10.81%	5	
534175	20.5	13.5	15.5	10.5	60	4	10.81%	6	
534346	20	14	14	11.5	59.5	6	16.22%	5	
534451	20.5	13.5	15	10.5	59.5	6	16.22%	6	
529129	19.5	13	16	10	58.5	8	21.62%	5	
534231	21	13	13.5	11	58.5	8	21.62%	6	
534347	19.5	13	15	10.5	58	10	27.03%	4	
534423	20	13.5	15	8.5	57	11	29.73%	5	
529402	21	10.5	16.5	8.5	56.5	12	32.43%	6	
534250	19.9	13	15	8.5	56.4	13	35.14%	5	
534343	19.5	13.5	13.5	9.5	56	14	37.84%	4	
524233	20.3	13.5	14.5	7.5	55.8	15	40.54%	5	
529237	21	12	11.5	11	55.5	16	43.24%	6	
534165	19.5	13.5	12.5	10	55.5	16	43.24%	4	
534391	19.9	14	12.5	9	55.4	18	48.65%	5	
534160	21	11.5	14	8.5	55	19	51.35%	6	
534388	19.3	13	14	8.5	54.8	20	54.05%	6	
529165	21	13.5	11	9	54.5	21	56.76%	5	
534381	20.5	14	12	8	54.5	21	56.76%	6	
534194	19.9	12	13.5	8.5	53.9	23	62.16%	5	
534196	21	12.5	13.2	7	53.7	24	64.86%	6	
542857	16.5	13	13	10.5	53	25	67.57%	5	
534355	19.8	13.5	13	6.5	52.8	26	70.27%	4	
529277	19.5	12.5	15.5	3.5	51	27	72.97%	5	
534348	18.8	13.5	10.5	8	50.8	28	75.68%	5	
534166	21	13	12.5	2.5	49	29	78.38%	4	
534205	20.5	12	13.5	2.2	48.2	30	81.08%	5	
534468	19	11.5	11.7	5	47.2	31	83.78%	4	
534426	20	11.5	10.5	4.5	46.5	32	86.49%	5	
534202	20.5	10	9	5.5	45	33	89.19%	6	
534187	19.9	10.5	13	1.5	44.9	34	91.89%	4	
534163	18.5	12	9.5	2.5	42.5	35	94.59%	5	
534188	14	12.5	7.5	4	38	36	97.30%	4	
534247	15.8	10.5	7	2.7	36	37	100.00%	5	

<p>박형준/2월/도약GS/8회/1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중요 판례를 타겟팅한 문제였습니다.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1</p> <p>139조 2항, 3항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첫 문제에서 마주하면 실수하기 쉬운 논점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p> <p>(2) 설문 1-2</p> <p>판례를 두꺼운 포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설’ 이라고 판례 목차 옆에 기재해주시는 것이 가독성이 더욱 좋아보였습니다.</p> <p>(3) 설문 2</p> <p>결론 틀리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판례의 키워드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p>(4) 설문 3</p> <p>기재되어야 하는 판례 3개가 누락 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p> <p>3. 소결</p> <p>대부분 잘 써주셨습니다. 다만 배점에 맞게 분량을 맞춰서 써주셔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2월/도약GS/8회/2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PCT라는 주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나, 기본논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익혀두시고 넘어가야 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도면누락 발견 시 취급’ 을 언급해주신 후에, 국제출원일이 2024년 2월 3일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언급해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 2</p> <p>4개 정도는 암기해두시고 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p> <p>(3) 설문 3</p> <p>영어원문의 법적지위와 국어번역문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로, 분량을 적게 쓸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목차를 미리 암기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4) 설문 4</p> <p>결론을 잘못 기재하신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답을 틀리면 감점이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p> <p>3. 소결</p> <p>PCT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기 쉽지만, 항상 나오는 논점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복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다른 분들이 GS수업을 많이 수강하지 않는 2월부터 풀답안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힘내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p>	

<p>박형준/2월/도약GS/8회/3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pbp 청구항 관련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중요 논점이기에 다들 잘 작성하여 주셨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pbp 기본 단문 설문이었습니다.</p> <p>배점이 15점으로 비교적 크나, 작성해야 할 것을 설문에서 명확히 제시하여 주었으므로 다들 배점에 맞게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2) 설문 2</p> <p>甲 출원의 등록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각 청구항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특허요건을 판단하면서 “효과의 현저성”, “구조나 성질” 등의 키워드를 적절히 활용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했습니다.</p> <p>“출원 일체의 원칙”에 따라 甲 출원 전체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답안이 다수 있었는데, 문제의 취지에 비추어 각 청구항의 적법 여부를 달리 검토한 경우에 점수를 높게 부여하였습니다.</p> <p>(3) 설문 3</p> <p>침해요건 판단에 있어 청구항 2의 권리 범위를 확정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설문 1에 작성한 침해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判例를 다시 작성한 답안이 몇몇 있었는데, 문제별로 통채점하므로 굳이 작성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p>	

3. 소결

pbp 청구항 논점은 A급으로 손꼽히는 논점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하므로, 판례를 정밀하게 암기해주셔야 합니다. 아직 2월이기에 암기의 정밀도가 낮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늦어도 5~6월까지의 암기를 완성해주셔야 합니다.

판례의 흐름 및 키워드를 먼저 암기하신 후 차츰 판례 암기의 정밀도를 높여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p>박형준/2월/도약GS/8회/4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젍슨 청구항의 전제부 공지 관련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배점이 20점으로 비교적 크므로 목차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무효심판의 적부를 검토하신 경우 추가 점수를 드렸습니다. 다만 적부에 대해 길게 작성할 실익은 없어 보였습니다.</p> <p>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선행문헌의 조합 가부 등의 판례를 작성하신 경우에도 일정 점수를 드렸으나, 이를 길게 작성한 답안은 문제에서 묻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상을 받았습니다.</p> <p>3. 소결</p> <p>도약 GS 8회차까지 작성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p> <p>3월 실전 GS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약 GS를 기본서나 판례집에 단권화하는 시간을 갖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p>	

<문-1>

2.8

I. 설문 (1)-1)

1. 무효심판 피청구인 청구

(1) 무효심판 의의 취지 - 1332

공익상 하자있는 특허를 인멸시키는 제도이다.

(2) 피청구인 청구 - 1392 조항

공유 특허권 존속특허자에게 대해 심판 청구(이는 "공유자 모두" 를 피청구인으로써 해야 한다.

(3) 사안

甲. 2 모두에게 공동으로 피청구인 청구 인정된다.

2.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인 청구

(1) 권리범위 확인심판 의의 취지 - 1352 조항

불쟁 예방 및 적확한 해결을 위해 특허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 청구 - 1392 조항

특허권 존속공유자가 그 권리에 관해 심판 청구시 "공유자 모두" 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

(3) 사안

甲. 2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인 청구 인정된다.

II. 설문 ~~(1)~~ (1)-2)

5.6



1.	<p>심결취소소송 의의 취지 - 1862</p> <p>당사자의 재판받은 권리 행사를 위해 심결 당사자 등은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p>
2.	<p>원고징거 - 1862 연행</p> <p>甲과 2은 심결의 당사자로서 원고징거를 인정된다.</p>
3.	<p>문제징</p> <p>심결취소소송의 경우 139조 3항과 같은 규정이 없어 모 두가 공동으로 소 제기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p>
4.	<p>핵심</p> <p>① 유사필수성 공동소송성, ② 고유필수성 공동소송성 있다.</p> <hr style="border: 2px solid red;"/>
5.	<p>취소소송</p>
(1)	<p>결론 - 유사필수성 공동소송성</p> <p>상표법 관련 사안에서 / 공유자 1인만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심결은 취소한 수 있게 하도록 하기위해, 공동으로 또는 각자가 심결취소소송 제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심결 취소소송 제기는 상표법의 비당행위로 보아 각자가 할 수 있다고 했다.</p>
(2)	<p>원래</p>

① 1인의 2 제기를 분허할 경우 다른 공유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에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② 1인의 2 제기를 허용하더라도 승인시 활동판결에 따라 모두에 대한 심판 절차 재개되고 패소시 유죄 심판 확정되는 바 심판 결과 합일한 채 효력이 변한다. / 할 수 없다.

6. 검토

특정 공유어는 민법에 관한 규정 적용될 수 있는 바 위헌에 타당하다.

7. 사안

甲. 2 문 모두 공동으로 만든 저작물 인정된다.

Ⅱ. 설문 (2)

1. 심판처칙의 - 1867 6회

심판처소송은 심판에 대한 것이 어떤 제기할 수 없다.

2. 문제점

심판처소송 절차에서 심판처에서 심리. 판단하지 않은 사실은 사유 주장. 입증 가능하지 문제된다.

3. 항변

① 심판처칙의를 구성하고 있는바 심판처소송은 심판의 사후심정 생질로서 ~~주장~~ 새로운 사유 주장할 수 있다는 제한 및, ② 심판처칙의를 구성한 별인 바 심판처소송은 복심적 사정을 가지므로 새로운 사유 주장할 수 있다는 무제한성이다.

4. 취지

통 원칙적으로 심판처차에서 ~~주~~심리·판단되지 않은 사유도 당사자의 취지를 발생 문제 없는, 주된 취지 복합하는 경우 주장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취지를 박탈 문제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5. 검토

심판·소송 경시. 기술심리한 제 등 복 때 원칙적으로 무제한, 예외적으로 취지를 박탈 문제시 제한으로 보는 취지 타당하다.

6. 사안

甲은 2에게 취지를 박탈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심판처차에서 심리·판단되지 않은 새로운 사유는 소판처차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다.

10. 심문 (3)	
1. 심결추진소송 심리범위 취사제	
(1) 심사. 심판 단계	
	<p>· 법 62조, 63조, 170조 등 당사자의 정차권 보장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강행규정이거나 출원인에게 결의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심결 등은 정차권 위법이 있다.</p>
(2) 심송 단계	
	<p>이러한 법리는 심결추진소송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바, 심송단계에서도 의견제출기회 부여해 바 없는 사유를 새로이 주장하는 것을 불허된다.</p>
(3) 주된 취지 복합하는 경우	
	<p>이미 제기된 사유나 주된 취지를 복합하여 출원인에게 상당심으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된 바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할 수 있다.</p>
2. 진본성 판단 시 주된 취지 복합 판단 취사제	
	<p>선형문헌 내용, 진본성 판단 제제사실, 판단 내용, 출원인의 배제 방향, 실제 출원인의 의견제출기회 부여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p>
3. 주행행반영 변경 취사제	
(1) 진본성 판단방법	

출원반명을 선행공지기술 참작하여 확정하리, 즉시행반명은 선택하여, 서로 대비하여 공용성과 차이점을 확정할 후, 그러한 차이가 특정 기술자가 당해 기술수준 고려하여 쉽게 극복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즉시행반명 변경

즉시행반명을 변경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 판단 내용이 달라질 것이므로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제출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없는 한 새로운 기재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

4. 사안

(1) 즉시행반명 변경 여부

특허청 소송소행자는 소심단계에서 즉시행반명을 2로 변경할 바 이는 주된 선행반명을 변경할 새로운 기재이유가 해당한다.

(2) 주된 취지 포함 여부

심사. 심판단계에서는 선행반명 1.2 결합에 의한 진보성 의하면 무시될 바 주된 취지 포함한다 볼 수 없는 새로운 기재이유다.

(3) 인결

출원인에게 의견제출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바 없으므로 특허청 소송소행자 주장 **부당하다**

(문-2)

I. 설문 (1)

1. 국제출원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시대이다.

2. 국제출원인 인정

대한민국은 자생적으로 자명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인이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1942 (항))

3. 도면 부제출시 취급

(1) 취지 취급 - 1942 3항

도면에 대해 적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취급해야 한다.

(2) 이후 취급

① 도면 제출시 그 제출한 도면은 국제출원인으로 본다.

② 도면 부제출시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사안

(1) 법칙 취급

도면 필요 없다는 취지 의견 제출한 바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국제출원인

국제출원인은 발제 제호인인 2024. 2. 3 이 된다.

II. 실용 (2)

1. 국제출원 취급

3.5

대한민국 지방국으로 지명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국제출원인이다. (1992 188)

2. 국내진입시면제출 - 2032

출원 甲은 국내시면제출기간 (국제출원일로부터 2년 7월) 내에 국내진입시면 제출해야 한다.

3. 번역문 제출 - 2012

甲은 외국어로 출원한바 국내시면제출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4. 수수료 납부

甲은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5. 심사청구

甲은 출원 국제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III. 실문 (3)	
1. 영어유문	
(1) 관련 규정 - 2002의 2 2항	국세추징금일까지 제출된 반납의 실행 청구범위. 도면은 추징금이 최초로 청구된 영어유문 및 도면으로 본다.
(2) 범칙 지위	최초 영어유문. 도면의 지위를 가진다.
(3) 영향	추징금의 이연은 고지시키는 영향을 하는 바 신규사행추가금 지. 확대된 영어유문 주의 등 판단 시 기준이 된다.
2. 번역문	
(1) 관련 규정 - 2012 5항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추징금일까지 제출한 반납 의 실행 등을 최종국어번역문에 따라 범칙한 것으로 본다.
(2) 범칙 지위	번역문의 지위를 가진다.
(3) 영향	번역문도 심사 및 등록의 대상이 되며, 원문과 함께 신규사행추가금지 판단시의 기준이 된다.

3.9

IV. 선행 (4) 3, 5

1. 발명 의의. 청구 - 472

출원인 편의를 위해 선행 사건 하 출원인 대해 발명한
수 있다.

2. 신규사항 추가금지 - 472 2항

제조사 불의라 방지는 위해 신규사항 추가 아닌 범위 내에
서 발명한 수 있다.

3. 국제출원 특례 - 2082 3항. 4항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의 경우 최초 국어번역문 및 최
초 명세서 도면 범위 내에서 발명한 수 있다.

4. 사안

영어원문과 최초 국어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심사단계에
서는 영어원문 및 최초 국어번역문 모두라 비교하여
신규사항 추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심사단계에
서 영어원문과 대비하여 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따라서 심사관의 발명을 인정하 판단은 부적법하다.

<끝>

(14)

〈문-3〉

I. 서문 (1)

1. PBP 청구항 의의

제법의 현상을 포함하는 청구항을 말한다.

2. 필요성

발명의 종류에 따라 발명의 구조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 힘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제2방법은 한 정하는 방법으로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3. 종류

(1) 진정한 PBP 청구항

제2방법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구항이다.

(2) 부진정 PBP 청구항

반드시 제2방법으로 한정할 필요성을 갖는 청구항이다.

4. 허용여부

앞서 언급한 사항에서 청구범위의 기재에 대해 자유로운 방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PBP 청구항도 허용된다.

5. 해석

① 일수식, ② 이수식 등이 있다.

6. 특허요건 판단시 쉼시제

(1) 종래 쉼시제

청구항은 제2방법 해명으로 표현한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제2방법 기재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항 기재 자체로서 판단했다.

(2) 전합 쉼시제

1) 특허반명 범주

특허반명에는 물건반명, 방법반명, 물건은 생산하는 방법반명으로 구분된다(22조 3호)

2) PBP 청구항 성질

PBP 청구항은 제2방법으로 한정하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발명은 물건반명에 해당한다.

3) 물건반명 특징

물건반명을 청구항에 그 구나 성질을 특징하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4) 제2방법 의미

제2방법이 기재된 경우 그 제2방법은 물건의 구나 성질을 특징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5) 결론

물건반명을 제2방법으로 한정하는 방법으로 표현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제2방법 자체로 핵심하여 파악한 것이 아니라 제2방법 기재를 포함하는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를 바탕으로 물건의 구성·성질을 파악해야 한다.

7. 침해요건 판단시 쉼시제

(1) 특허요건 판단시 타 아첨가지

침해요건 판단시에도 원칙적으로 위 특허요건 판단시 타 아첨가지로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를 바탕으로 물건반영의 구성·성질을 특정하여 파악해야 한다.

(2)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그러한 방법으로 파악된 청구범위가 명백히 전제적인 기재를 바탕으로 파악한 방법의 실시예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는 등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2방법으로 핵심 핵심하여 파악해야 한다.

8. 결론

PBP 침해항의 경우에도 그 불질은 물건반영에 해당하므로 특허요건 판단시 청구범위 모든 기재를 바탕으로, 침해요건 판단시에도 예외적으로 핵심 핵심하는 쉼시제라도 읽음 라당하다.

II. 실용 (2)

1. 관련 특허요건

(1) 신규성 - 29조 1항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바, 출원발명을 선행발명과 다른 것은 요한다.

(2) 진보성 - 29조 2항

기술발전촉진을 위해, 출원발명을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반명할 수 있는 것은 요한다.

2. 청구항 1

(1) 특징

청구항 1은 방법발명으로서 방법 A 사용시 공지된 물건인 잉크 X에 비해 변질이 현저히 적은 잉크가 생산된다.

(2) 신규성, 진보성 판단

잉크 X에 비해 변질이 현저히 적다는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는 바, 불래 공지된 잉크 제2방법과 달라 신규성 인정되고, 효과 현저성으로 진보성 인정된다.

(3) 2견

청구항 1 등록 적법하다.

3. 청구항 2

(1) 특징



	<p>청구항 2는 물건 발명으로써 방법 A를 잉크 제2시 그 잉크는 공지된 잉크 X에 비해 번짐이 현저히 적은 바 이하의 현상 인정된다.</p>
(2)	<p>신규성. 진보성 판단 번짐이 현저히 적은 바 공지된 잉크 X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이 신규성 인정되고, 이하 현상으로 <u>진보성</u> 또한 인정된다.</p>
(3)	<p>신경 청구항 2 등록 적법하다.</p>
4.	<p>청구항 3</p>
(1)	<p>특징 청구항 3은 방법발명으로써 방법 B는 제2방법 Y보다 제2시각을 현저히 단축시키는 바 <u>이하의 현상 인정된다.</u></p>
(2)	<p>신규성. 진보성 판단 제2시각 현저히 단축된 바 공지된 제법 Y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이 신규성 인정되고, 이하 현상으로 <u>진보성</u> 인정된다.</p>
(3)	<p><u>신경</u> 청구항 3 등록 적법하다.</p>
5.	<p>청구항 4</p>

(1) 특징	청구항 4는 물건반영으로서 방법 B로 제조된 잉크는 공지 잉크 X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2) 신규성. 진보성 판단	잉크 간 별다른 차이가 없어 신규성 부정될 것으로 보이고 선행 신규성 인정되더라도 <u>진보성 부정될 것이다.</u>
(3) 인견	청구항 4 등록 부정법하다.
6. 결론	청구항 1, 2, 3 등록 <u>정법하다</u> , 청구항 4 등록 <u>부정법하다.</u>
III. 결론 (3)	3.5
1. 특허반영 <u>합성</u>	
(1) 특징 <u>진보성</u>	방법 A는 공지 제조방법 Y에 물건 P를 첨가하는 단계는 더 포함하고, 방법 A로 제조된 잉크는 잉크 X에 물질을 P를 더 포함하는 것 이외 별다른 구성상 특징이 없다.
(2) <u>부진성 PBP</u> 청구항 여부	방법 A로 제조된 잉크는 잉크 X에 P를 포함하는 것으로 <u>표현된 5</u> 있는 바 <u>부진성 PBP 청구항이다.</u>

(3) 명백 분할의 여부

제법 A로 제조된 잉크는 잉크 X에 물론 P를 포함하는 것
 이이 별다른 구성성 특징이 없는데 바 잉크 자체를 제법
 위를 인정하는 것은 발명의 실체에 비해 지나치게 넓
 이 명백히 분할하다.

(4) 연결

방법 A로 한정된 방법 A로 제조되는 잉크가 甲의 특허
 권 권리범위에 해당한다.

2. 속보판단

Z이 제조한 잉크는 방법 A와 전혀 다른 방법 C로 제조된
 잉크로서 방법이 전혀 상이하므로 甲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침해가 아니므로 甲의 경고는 부당하다.

<끝>

문-4

14

I. 무효심판 의의. 취지 - 1332

발명의 발명자 해결수단으로서, 이해 관계인은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II. 적법

2은 甲으로부터 침해금지 경고를 받은 자로서 이해관계 인정되고 다른 복수법 사유 보이지 않아 무효심판 적법하다.

III. 진보성 판단.

1. 진보성 의의. 취지 - 292 2항

기술발전촉진을 위해 진보발명을 공시반영으로부터 수반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요한다.

2. 심사 청구항 여부

甲의 청구항 1은 제시부기재나 특징부 기재가 포함될 심사 청구항에 해당한다.

3. 특허반영 학제

甲의 특허반영은 청구항 기재로 보아 'A+B+C+D+E'이다.

4. 선행기술 검색

(1) 선행문헌 1

선행문헌 1은 청구항의 특징을 당시 공지되지 않은 공개용반의 부과회로바 선행문헌 검색 없다.

(2) 선행문헌 2

선행문헌 2는 청구항의 특징을 공지될 바 선행문헌 검색 있다.

5. 전제부 기재 공지 여부

(1) 공개 취사제

전제부에 기재된 발명은 공지된 것으로 보인다.

(2) 전항 취사제

1) 취사

선행기술 공지 여부는 사실인점 문제로서 공지되었는지 여부는 신규성, 진보성은 부정하는 자가 증명책임은 있다. 상대방의 재방, 현시한 사실이 아닐한 증거로서 증명되어야 한다.

2) 결론

전제부의 기재는 그 목적 및 내용이 다양하므로 전제부의 기재된 사항만을 가지고 그러한 기술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검토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기재된 기술의 기재 위치에

따라 출지 여부는 판단하는 것을 개별적 진실에 관한
 수 있으므로 전합 취사제 타당하다.

(3) 사안

甲의 발명사 청구항 1 제1항 기재항으로 $A+B+C+D$
 가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공지의 사실상 추정. 복면

(1) 전합 취사제

1) 제1

심사과정을 심사관과 출원인 사이 의견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인바, 출원인이 명세서, 의견서 등에
 공지될 기술은 인정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사실상 추정

출원인의 의견서, 명세서 등 기재된 항목에 대해 제1항
 복 기재 사실이 단순히 ~~공제~~ 선행기술임을 넘어
 공지된 기술이라고 자인하는 경우 공지기술임이 사
 실상 추정된다.

3) 복면

출원과정 등에서 공지기술은 자인한 것이 출원인의
 착오에 의해 것이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그러한 추정은 복면될 수 있다.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2) 사안

1) 사실상 추정 여부

甲은 의견서 기재를 통해 A.B.C 및 D는 공시된 구성임은 자인
한바 A.B.C. 및 D는 공지가수임이 사실상 추정된다.

2) 복면 여부

甲의 특허심판 대응 과징 등 시행물건 1이 초은당시 공시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바 공지가수임은 자인한 것은
착안에 의할 것으로서 위 추정을 복면된다.

3) 소결

A.B.C. 및 D는 공지가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보성 판단

(1) 판단 방법 취사체

출원방법과 특허행방법 비교하여 차이점은 통상 기술자가 출원시
기술준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사안

상행물건 2에 기재된 후드 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甲의
특허방법을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워 보인다.

(3) 소결

특허방법 진보성 인정된다.

결론

甲의 특허방법 진보성 인정되고, 다른 무효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바 각심결 예상된다.

[문제-1] (특허법은 이하, 法이라 한다.)

I. 실문 (1) -1)

2.8

1. 무효심판 청구인 자격

(1) 공유특수권 공동심판 法 139조 2항

공유인 특허권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는 공유자 모두를 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안

甲과 乙이 공유특수권 특허권자로서 함께 청구인 자격을 가지는 바, 丙은 甲, 乙 모두를 대상으로 무효심판 청구해야 한다.

2. 특허권 권리범위항의심판 청구인 자격

(1) 공유특수권 공동심판 法 139조 3항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해 심판 행시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

(2) 사안

甲과 乙이 함께 특허권인 자격을 가지는 바, 甲과 乙은 공동으로 乙에 대해 권리범위항의심판은 청구해야 한다.

II. 실문 (2)



II. 심문 (1)-2

5.6

1. 심문취조응 조.186조

심문에서 불리한 심문을 받은 자가 특허법원에 그 심문의 취조를 수반하는 조항이다.

2. 심문취조응 원권적 조.186조 2항

연동의 대응이 되는 심문의 당사자 등은 원권적임을 가지는 바, ㉠ 甲과 같은 원권적이지 않다.

3. 문제점

특허권이 승인이 경우 심문취조응의 원권적 인정하여, 심판에서의 조.139조 3항과 같은 양면 규정이 있어 공과사인 조항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4. 학설

㉠ 소유권주의 공행심판, ㉡ 유사권주의 공동소송심판 있다.

5. 취지

(1) 결론

상동법 인연 사건에서, 공적인 특허권은 소변사기거나 그 권리 행사는 방해하는 심문이 있는 경우 공과사 증인이 단독으로 심문취조응 제기 가능하다 하되, 심문취조응을

보존행위로 보는 동시에 유사필수직 공동상식 일방이다.

(2) 논거

- ① 공동상식을 강대하면 공위자 능 여는 하나가 드 세기에
형준하지 않은 등으로 특허권 공위자들에게 불리한 심판
이 그대로 확립되는 불합리한 전과가 발생할 수 있고,
- ② 반면 공위자 능 1인의 드 세기를 허용하여라도 승인하면
심판이 취소되고 심판이 재처리여, 폐쇄하면 심판이 확
립되는 것이 그쳐 합헌행위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

6. 결론

심판취소소송은 보존행위 인정인시 공위자 능 1인이 드 세기
가능하게 함이 타당하다 (민법 265조).

7. 4안의 해설

- ① 甲과 같은 모든 해당 심판취소소송에 대한 원판결은 원, 1심판
- ② 甲 같은 그 어느 하나가든 자위하여 드 세기 가능하다.

III. 실문 (2)

5.6

1. 심판권리주의 조.186조 6항

심판취소소송은 심판에 대한 것이 아닌 재개할 수 없다.



2. 문제점

심판취소등에서 심판 권위에서 심의·판단 받은 심판의 위법 사유를 새로 주장·입증 가능하지 못하다.

3. 핵심

① 심판권취소의 근거 한 제한심, ② 심판의 취소사유 및 심판권취소의, 심판취소등이 사실상 제심을 이유로 한 무제한심이 적용한다.

4. 사례

① 심판취소등의 효력은 심판의 위법성 인방임을 근거로, 당사자는 심판 권위에서 심의·판단된 대로 심판의 위법 사유를 각유리 주장·입증 가능하여, 법원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한다.
 ② 이다 같이 볼라고 하여 신의칙 배기 금반면에 반환당할 수도 없고, ③ 심판의 이익은 제한되거나 제3자의 이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다.

5. 결론

가능심리한 제도 및 심판취소등의 효력 등 고려할 때, 무제한심은 권익을 하는 사례의 테를 인용 하겠다.

6. 사안의 해명

甲은 해명 심결취소응에서 심결판재에서 심사·심판단계
 았은 심결의 위법사유를 세로이 주장·입증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사실 심사·심판할 수
 있다.

[V] 결론 (3)

1. 기결판결불복심판 심리범위 확대제

(1) 심사·심판 단계

조. 62조, 63조, 110조에서 기결판결 권 또는 기결판결의 여부
 다른 사유로 기결심판시 의견제출가능 부여하는 것은 기결
 규정으로 여러한 의견제출가능 없이 심결이 권리에 원이
 결정사유로 기결판결불복심판을 기결한 심결은 위법하다.

(2) 심결취소응 - 이관제

이러한 법리는 심결취소응은 이관제라,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가능을 부여하지 았은 새로운 기결사유를
 들이 심결의 위법 사유는 권도 결정사유를 주장·입
 증할 수 았다.

(3) 주된 취지 부합하는 경우

다만 심사·심판 단계에서 직접 주장·입증았 았더라도
 이미 심사·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가능을 부여한 기결사유

를 반영하는 것이 적지 않고 그 주된 취지가 부합하는
경우이면 주권 양용 가능하다.

2. 진보성 판단의 경우 주권 취지 부합 판단

(1) 진보성 조. 29조 2항

기술·산업 발전에 의해, 공익으로부터 용이하게 반영 불가능한 것
을 의미하는 특이성이다.

(2) 심판기준총칙에서 주권 부합 판단 - 특이성 취지

산행기술총칙, 진보성 판단의 관세 및 판단 사용과 같이
중요 내용이 일치하고, 본질의 방향이 같아 신기술 발전
의를 기하기 위하여 유사한 경우로 판단된다.

(3) 주권행위반영이 변경된 경우 취지

1) 진보성 판단 방법

특이반영의 취지·기술사상과 산행기술 범위 및 기술내용
비교한 후, 주권행위반영은 전제하고, 특이반영과 주권행위반영
사이 상충·차이점 파악 후 통상의 기술이 아닌 것
이 그 차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2) 주권행위반영 변경 및 결론

아래한 진보성 판단의 주권행위반영이 변경된 경우 인본의
은 차이점 판단 및 그 극복 여부 등 판단 내용이
일치하므로, 신기술은 취지 내용의 기법이 일치하는 등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주권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개량에 대해한다.

3. 사안의 해결 - 선행기술과 주상 항목(2)

(1) 주상항목 변경 여부

실용성 불충분하다, 본래 선행기술이 주상항목이었던 것
으로 파악되므로 선행기술 2를 주상항목으로 변경한
것이다.

(2) 주된 취의 부합 여부

주상항목 변경에 따른 취의 본질에 본질적으로 의의점을 가하여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주된 취의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개량에 대해한다.

(3) 결론

따라서 선행기술과의 주상도 상하. 상반 관계에서 의의점을
해가 없으므로 새로운 개량을 인정할 것으로서 **부당하다** [결]

21

[문제-2]

I. 실용성

1. 구체화된

하나의 특징은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
를 두게 하는 제도이다.

2. 국제출원인의 인격 조(1942) 1항

국제출원 시점이 출국특허청에 도달한 날은 국제출원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본인명명 조(1942) 2항

항상부기 부재물, 신의 기재불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명명은 배리어 국제출원인이 면제될 수 있다.

4. 도면 부재물 시의 취급

(1) 도면 누락의 경우 조(1942) 3항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한 기재 누락으로 도면이 미흡한 경우 그 취지는 공제한다.

(2) 도면 미흡 여부에 따른 효과

① 도면 미흡시에는 그 도면 조항은 국제출원인으로 본다(조(1942) 4항 본문), ② 부재물시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가 없었던 것을 취급한다(동조 동항 단서).

5. 사안의 해명 - 甲 도면 부재물 법칙 효과

① 甲은 도면 누락 통지에도 도면은 미흡하지 않은 바에 따른다.
 ②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었던 것이 인정되며, ③ 甲의 국제출원인은 2024.2.3.이 된다.

7.5

II. 실문 (2)

1.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대한민국은 지방으로 한 국제출원으로 그 국제출원인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며 (조. 199조 1항), ② 다만 특허출원제도가 존하는 개체 별첨 특허규정이 있다 (조. 199조 24조).

2. 甲의 특허출원인 없이 권과 관행 가부

① 甲은 국제에 출원·영양가 없이 재타에 해당하는데.
② 개국까지 특허출원인 없이 국법에 권과 관행을 안고 있다 (조. 206조).

3. 국제출원에 관입에 관한 권과

(1) 국제출원시점 외를 조. 203조 1항

甲은 국제출원시점기간인 2026. 9. 3. 까지, 국제출원시점 외를 해야 한다.

(2) 국제출원외를 조. 201조 1항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제출원시점기간인 2026. 9. 3. 까지 외국 출원에 대한 국제출원외를 해야 한다.

(3) 수속료 조. 82조

甲은 출원국에서 관련 수속료를 납입해야 한다.

(4) 심사료 조. 59조. 20조

甲은 2024. 2. 3. 까지 심사료를 납입해야 한다.

7, 5

III. 식민 (3)

1. 영미권문의 법적 지위

(1) 특별 규정 조. 200조의 2 조항

국제불인정인까지 외출한 반영의 신청, 허가청구 및 인면은
조. 42조 조항에 따른 특별불인정에 해당로 강부인 명세
시 다른 인면으로 본다.

(2) 법적 지위

따라서 영미권문은 "외출의 명세서·인면"의 지위를 가진다.

2. 국제불인정문의 법적 지위

(1) 특별 규정 조. 201조 5항

특별불인정이 국제불인정문은 재발한 경우 국제불인정인까지 외출한
반영의 신청, 허가청구, 인면은 다음 중 국제불인정문과 다른
국제불인정인에게 조. 41조 조항에 따른 인면으로 본다.

(2) 법적 지위

따라서 국제불인정문은 "반영의 사기 사기" 명세서·인면의
지위를 가진다.

2, 5

IV. 식민 (4)

1. 보강 조. 41조

출원인 인면은 국제. 영미서 등을 영. 강부인도 제외이다.

2. 번영의 원인과 쇠퇴의 원인을 설명하라

① 번영의 원인은 인적 자원의 증가와 기술의 진보에 있다. ② 쇠퇴의 원인은 인적 자원의 감소와 기술의 퇴보에 있다.

3. 국가의 번영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

번영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4. 사안의 해결 - 상사법 관련 각주 (5점)

① 상사법 관련 각주는 영미법과 대륙법 국가의 차이와 함께 관련해야 하므로, ② 다음 제정법률안을 근거로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분석한다. [총 5]

13.9

[문제-3]

I. 식문 (1)

1. KBP 항공사의 취체제

KBP 항공사에 관하여는 문헌발명은 기재되어 있음으로 그 취체제의 기제를 도입하는 취체를 의미한다.

2. 권역성



인부와 하강을, 분사하학 같은 반경과 같이 반경의 응수에 따라 제2방법의 기재로 특정하지 않으면 그 구와 영년의 피상이 이력을 정함이 있으므로, ①그같은 반경을 제1방법에 의해만 보호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할 바. ②PBP 항방의 기재가 필요하다.

3. 종류

1) 원링 PBP 항방

제2방법의 특정한 수단이 없는 반경을 의미한다.

2) 복원링 PBP 항방

제2방법으로 특정한 편이 없이 원형의 제2방법 기계를 포함시킨 반경을 의미한다.

4. PBP 항방 허부(각주)

2007년 7월 1일 개정법은 조. 42로 6항을 신설하여 PBP 항방과 같은 기재 방식을 허용하였다.

5. 특허인 원인지 항방기 제조방법

1) 학설

① 인위적인 원료생성 및 제법과정, ② 인위적 등이 있다.

2) 종래 취지

항방을 제2방법 기재로 반경을 특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기 따라 그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제2방법 한정 없이 물건 자체로 파악하는 양성이된다.

(3) 관습 위(190)

1) 특허법상 한정 종류

특.22 조 3호 각목은 한정을 물건한정, '방법한정', '제2방법 한정'으로 나눈다.

2) PBP 관습의 한정 성질

관계자로 물건으로 기재하여 제2방법의 기능을 포함하는 한정 내용은 허용생성된다. PBP 관습은 물건한정에 해당한다.

3) 물건한정 기재 방법

물건한정 관습위는 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4) 제2방법 기재의 역할

여기서 제2방법은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수단으로서만 의미는 가진다.

5) 결론

라시 제2방법으로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 여부를 묻지만, 제2방법에 한정하여 만능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제2방법 기재를 포함할 관습에 준한 기재에 의하여 파악하는 구성을 가지는 물건은 발명을 파악해야 한다.

(A) 검토

PBP 청구항은 물건반영의 인용이나, 직접 기재로 인용한다.

6. 컴퓨터인 관공시 청구항의 해석방법

(1) 기재

1) 인용 - 특허인 관공시 바깥까지

위의 같은 특허인 관공시 해석방법은 컴퓨터 관공시에
인용어로 바깥까지도 적용된다.

2) 예외

다만 여타한 해석방법이 위에 언급된 관공시 기재 명세
서 전체 기재로 파악하는 반영 관공시에 양의 기재
가 없거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석방법이 양에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2) 검토

물건 기재로 보여서도 부인용 PBP 청구항의 무효를 권리 행사
상 항을 고려 여자를 큰 기재로 인용한다.

7. 결론

PBP 청구항은 물건반영 인용으로 허용되며, 다만 그 해석방
법과 관련하여 부인용 PBP 청구항에 대해 특별한 해석이 어
직이 있다.

II. 식별(2)

1. 제형성

이 특허의 진본성은 문제삼기 않고, 신빙성, 진본성을 위주로 등록 직부근 신뢰다.

2. 관련 특허인

(1) 신빙성 특293 1항

특정 상어의 디자인이, 평가도나 용해성에 관한 것 안다.

(2) 진본성 특293 2항

기술·신용 반증을 하며, 평가도로 특히 특정 인정 불가한 것 안다.

3. 항구항 1의 경우

(1) 특성

방법 A로 제외된 일부 특정 안 X에 비해 방법 변 개 각이, 그 차의 현 상이 있다.

(2) 등록 직부 (특293)

따라서 방법 A는 신빙성, 진본성이 안정된 것이다. 등록 타 항하여 직부한다.

4. 항구항 2의 경우

(1) 특성

방법 A로 처리는 양호 PP 방향으로, ② 그 본인의 권
나 승인에게 양 X에 대해 변제 행위가 같은 특성을
가치도 바. ③ 구와 다른 회사가 들어간다.

(2) 등록 식부(각부)

라비 신상성·권속성 인정는 선과 등록 타당하다.

5. 항방 3의 경우

(1) 특징

방법 B는 제외항 Y와 제외항의 본래 원부이다,
그 후의 변제 인정된다.

(2) 등록 식부(각부)

라비 신상성·권속성 인정는 등록 타당하다.

6. 항방 4의 경우

(1) 특징

① 방법 B로 처리는 양호 PP 방향으로, ② 그 본인의 구
로 승인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이 양 X와 변제와
이가 없는 중립성 행위에 들어간다.

(2) 등록 식부(각부)

라비 신상성·권속성 등록 타당하다.

7. 신문의 해명

- ① 원격적으로 총인인치의 원격에 따라 등록이되는 것 같다.
- ② 이미 등록된 야생 항생 물질에 대한 무효사유가 있어 등록이 부속된다.

III. **신분 (3)** 3.5

1. **쟁쟁쟁**

항생 제2항은 PBP 항생에 해당하는 바, 신분 (1)에서 상술한 청구항의 배제방법에 따라 2의 항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타당하지 않다.

2. 제2항의 PBP 항생 종류 - 부속된 PBP 항생

- ① 방법 A는 Y에 특정한 P를 포함하는 관계를 포함하여,
- ② 양인 X에 P를 더 포함하는 것 이에 대한 변화는 구성성 특성이 없다 바, ③ 제2항으로 특정한 기재한 원인이 없는 부속된 PBP 항생에 해당한다.

3. 제2항은 제2항의 기재로 한정해야 하리라(각주)

- ① 부속된 PBP 항생의 제2항 범위를 특정한 자제로 파악하기 어렵, ② 명세서 기재에서 파악하는 범위의 산정, 즉 이의 경우 '제2항'의 바에 권고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명백히 특정된 바, ③ 침해 판단시 제2항은 제2항

법 기세로 반영한 것이라 한다.

4. 신문의 배정 - 경관 징복 (소)

① 따라서 제1항법 기세로 반영한, 즉 방법 상의 제1항은 인위

② 그의 방법 C로 제1항 임의로 그 구성이 생략하여 권리법

위에 속하지 않는다 바, ③ 甲의 경관 징복이다. [출]

[문제-4]

12.5

I 무효심판 조. 33조

응답, 하자 같은 특성을 소진시키는 것은 권리이다.

II 관련 무효사유 - 권리법 조. 29조 2항

가. 산업 보편을 위해, 공개능력에 의해 쉽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안다.

III 특허발명 특성

A+B+C+D+E로 구성된 제1항 발명이다.

IV 산업보편적 이익

1. 산업보편적 이익의 경우

$A+B+C+D$ 로시, 甲 특허권이 낀 승계권 없이 원상회복
신생물권 각각 없다.

2. 신생물권 2의 경우

甲 특허권이 낀 승계권 2로시 신생물권 각각 있다.

V. 문제권 권리

1. 甲 항항 | 생인-생인 항항

권리부 $A+B+C+D$ 다 E로 기재한 생인항항에 해당한다.

2. 생인

① 권리부에 기재된 생인항항은 승계권으로 볼 수 있다.

② 특허권 생인항항을 생인항항이 있었던 경우 특허권 항항이 없다.

VI. 권리부 기재 생인항항 권리부 여부(50)

1. 권리부 생인항항

권리부 또는 생인항항은 기재된 생인항항은 승계권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생인항항 생인항항

(1) 생인항항

① 특허권이 낀 생인항항은 생인항항의 문제권, ② 그 생인항항
 책임은 생인항항을 주장하는 특허권 항항이 있다, ③ 이는 생인항항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2) 생인항항

① 할당자의 권제부들 그 목적은 매각하게 하는 의미에서
가등비용 약하게 적음 목적은 할당자들 등 그 목적이나
비용이 다양할 때, ② 권제부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승계
가능은 볼 수 없다.

3. 집권 - 관할 소재지 별다른

권제부에 특정한 사항으로 적을 것이 아니라 관할 볼
수 없고, 각각의 사실에 대한 규정이 있다, 관할
소재지가 다양하다.

VII. 특권채권 승계인 및 배부 기부(의무)

1. 관할 소재지

(1) 관할

특권채권 승계인은 상당한 경이채권자의 특권인 의면
시 의면 등을 통해 위임채권에게 권리 부여하는 것으로,
법정·의면의 등을 거쳐야 이러한 규정이 특권채권
위임채권 각인한 경우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채권 취득

때서 특권인이 배정채권이나 종채권자의 취득은 임의
의면 행위가 특권인 위임채권을 인정할 수 있을 수
있을 경우, 이는 특권인 위임채권인 채권 취득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복면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기]



다만 이러한 추정이 권리적인 것은 아닌 바, 선제권은
 출원인 측에서 양도 받은 것으로 승낙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같이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에는 사본상
 추정이 가능하다.

2. 검토

심사청에서 상기 과인은 ^{사본상} 자본금 출회 불
 득은 없으나, 사본상 추경하여 복원 여부는
 등 뒤에게 해당 사항이다.

VII 사안의 해결 - 각각심판 예정

1. $A+B+C+D$ 가 관계부 기재에 출원인인(2주)

이는 관계부에 기재한 생성물은 출원인
 측으로 볼 수 없다.

2. 공개라인으로 생성물 출원(각주)

다만 甲이 $A+B+C+D$ 를 출원인 측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3. 복원가능성(각주)

그러나 이는 甲의 관에 관한 바, 생성물
 인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A+B+C+D$ 가 생성물의
甲 발명의 진본성이 부진하지
 않은 한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심판인
 것이다. (아래예시)